

#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도서관정책과)

제출일 : 2026. 3.

## 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「공공도서관 제적·폐기도서 재활용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·폐기 자료 재활용을 위한 배부 가능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자료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19조의2(자료 기증) 조항 신설하여 제적·폐기자료에 대한 기증이 가능함을 명시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「공공도서관 제적·폐기도서 재활용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, 제적·폐기 자료 중 활용 가능한 자료의 기증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자료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.
- 특히,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기증받은 자료 중 미등록 자료와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를 개인·기관·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도서관 자료의 공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안은 제적·폐기 자료의 재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